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4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
박 석, 박춘선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영희, 이민석,
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환,
이희원, 장태용, 정지웅,
채수지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 의원(3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정비구역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, 입안 제안시 동의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기준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완화함(안 제10조제1항)
- 나.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 동의를 기준 완화에 따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구를 정리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6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에
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<u>60퍼센트</u>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<u>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0퍼센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정비 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기준(60퍼센트 이상→50퍼센트 이상)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l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